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08 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복기왕·박균택·김영호

김영배 • 윤준병 • 한정애

유동수・전재수・이훈기

이병진 • 박희승 • 조승래

서영교 • 이해식 • 조 국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·신혼부부 등에게 2~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.

청년·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~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주택의 소유권지분 상당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분만큼 제산세를 부과하고 있음.

이는 20년 이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운영해야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납세 부담으로 느껴져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·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 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 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%를 감면하려는 것임.

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해주려는 것임. 또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 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국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 원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8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이하 이 항에서 "공공주택사업자"라 한다)가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(이항 이 항에서 "지분적립형 주택"이라 한다)으로 최초로 공급하여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택(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 다만,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31조(임대주택 등에 대학	한 감	제31조(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
면) ① ~ ⑦ (생 략)		면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⑧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
		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이하
		이 항에서 "공공주택사업자"라
		한다)가 주택을 취득한 후 같
		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
		지분적립형 분양주택(이항 이
		항에서 "지분적립형 주택"이라
		한다)으로 최초로 공급하여 공
		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
		는 경우 그 주택(공공주택사업
		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)에
		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
		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
		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 다
		만,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
		현재 지분적립형 주택에 해당
		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
		지 하지 아니하다.